

26년 수가에 따른 입소비용 안내

2026년도를 맞이하여 평안의집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자로 2.89%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거) 다음과 같이 납부액이 변경되오니 아래의 등급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3,070	86,340	81,540
1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1일	93,070	18,614	11,168	7,446	9,000	27,614	20,168
	28일	2,605,960	521,190	312,710	208,470	252,000	773,190	564,710
	30일	2,792,100	558,420	335,050	223,360	270,000	828,420	605,050
2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1일	86,340	17,268	10,360.8	6,907.2	9,000	26,268	19,361
	28일	2,417,520	483,500	290,100	193,400	252,000	735,500	542,100
	30일	2,590,200	518,040	310,820	207,210	270,000	788,040	580,820
3 4 5 등 급	일수	총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월 납부액	
			일반(20%)	경감(12%)	경감(8%)	식재료비	일반(20%)	경감(12%)
	1일	81,540	16,308	9,784.8	6,523.2	9,000	25,308	18,785
	28일	2,283,120	456,620	273,970	182,640	252,000	708,620	525,970
	30일	2,446,200	489,240	293,540	195,690	270,000	759,240	563,540
	31일	2,527,740	505,540	303,320	202,210	279,000	784,540	582,3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근거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2조.